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27일

주지사CUOMO 처방약 남용 대응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약물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시기 적절하고 증진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 시간"으로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기록부를 제정하며, 모든 처방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남용되기 쉬운 일정 처방약의 분배에 보호 수단을 향상시키며, 주주들의 작업 그룹에 통증 치료와 처방약에 관한 의료 교육 과정과 다른 대중의 인식 수단을 안내하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맡기고, 보건부가 사용되지 않는 약의 안전한 처분 프로그램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처방약이 뉴욕주에서 분배되고 추적되는 방법을 철저히 검사하는 일련의 조항을 포함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처방약 남용으로 인해서 십대 자녀를 잃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신규 법안을 통해서 뉴욕주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법집행계와 의료계가 남용이 발생하기 전에 남용을 방지하고 범법자들을 퇴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처방약 남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법안을 창안한 Schneiderman 법무장관, 상원 다수당 지도자Skelos 및 Silver 의장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rick Schneiderman 법무부 장관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STOP으로 환자를 더 잘 도와주고, 처방약 밀매를 근절시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사이 현명하고 조절된 의사 소통을 위한 국가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상실을 행동으로 전환시킨 가족들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의 산물이며 앞으로 수년간 뉴욕주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뉴욕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포괄적인 대중을 처방약 남용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ean Skelos 상원 다수당 지도자는, "처방약 남용은 저희 주 전역에 걸쳐, 특히 진통제를 남용하여 비참한 결과에 다다르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이상 동안 이 법안을

지지해 온 Lanza 상원의원과 이에 대한 입법적 구제책이 중대하고 필요한 단계임을 일찍 인식한 상원 안전 위원회 의장인 Hannon 상원의원을 격찬합니다. 저는 주지사, 법무부 장관 및 처방약의 남용을 엄중히 단속하여 뉴요커들이 더 잘 보호받도록 책임을 다해 저희들과 협력한 주 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의회 의장은 "이러한 조치는 뉴욕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처방약 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안이 될 것입니다. 처방약은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잦기 때문에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의사들과 약사들은 처방약의 적절한 배분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법무부장관이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 점에 격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한 입법회의 동려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rew Lanza 상원의원은 "Cuomo 주지사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뉴욕주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가족들을 짓밟아 온 처방약 남용의 척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들과 약사들은 Staten Island 주민들이 처방약 남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처방약 남용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안을 통해서 다른 주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처방약 남용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Schneiderman 법무부장관, Cusick 의원 및 Hannon 상원의원의 이 생명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서 보여준 지도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Kemp Hannon은 "이 포괄적인 법안은 뉴욕주에서 팽배한 진통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인구 1,950만명에 불과한 뉴욕주에서 지난해 2,200만건 이상의 처방약이 처방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종결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통제가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진통제의 남용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법안이 상원 위원회의 2회의 회의와 뉴욕주의 처방약 문제: 포괄적 접근방법 *(The Prescription Drug Crisis in New York State: A Comprehensive Approach)*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가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Michael Cusick은 "저는 오늘 주지사가 이러한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한 점에 매우 기쁩니다. I-STOP은 제가 처방약 남용을 근절하고 처방약 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개혁의 결과입니다. 이 법안은 Lanza 상원의원, Schneiderman 법무부장관 및 주지사의 노고와 협조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서 처방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처방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남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약물 남용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I-STOP은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법집행 기관이 범죄의 예방에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될것입니다."

Richard N. Gottfried 위원회 의원은 "I-STOP은 생명을 구할것입니다. 전자 처방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처방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처방약 남용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의 이번 현안에 대한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처방약의 불법 사용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약물 관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연방 질병 관리 본부 (CDC)에 따르면, 약 15,000명이 매년 처방된 진통제를 과량 복용하여 사망합니다. 작년, 2010년 11세 이상의 미국인 20명 중 1명이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된 진통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처방된 진통제의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과 판매 및 약물 남용 치료에 대한 허용이 모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판매는 1999년에서 2010년 사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미국인 성인당 1달 동안 매 4시간에 한 번씩 하이드로코돈 5mg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처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방된 진통제를 남용하는 약 70%가 처방전으로 해당 약물을 받은 친지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십대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업데이트된 처방약 감시 프로그램 (I-STOP)

새로운 법안으로 보건부 (DOH)는 처방약 감시 프로그램 (PMP) 등록부를 구축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ㅅ서가는 처방약 남용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의료계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 처방약 암거래상"이 여러 의사들로부터 처방전을 불법으로 받을 기회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은 의사 처방약 암거래를 효과적으로 멈추고 불법적으로 획득된 처방약의 유통과 싸우기 위해 "실시간" 기준으로 약국에 보고된 조제된 규제 약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건부(DOH)의 안전한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록부의 향상 및 현대화를 요구합니다.

이 PMP 기록부는 의사 및 약사에 의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여 그들의 환자에 대한 규제 약물 내역을 보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가장 남용되기 쉽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규제 약물의 처방 및 조제 전 의료인들이 PMP 기록부를 참고하도록 하는 반면, 환자가 필요한 약을 이용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특정 상황에서 참고하는 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올바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처음으로 약사가 규제 약물의 조제 전 PMP 기록부를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약물의 전자 처방

이 종합 패키지는 종이 처방전에서 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 약물을 전자 처방(e-처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첫 시행 주들 중 하나가 됨으로써 뉴욕주를 국가적 선도자로 만들 것입니다. e-처방은 처방전의 수정과 위조 및 도난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 처방전은 서면 처방전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잘못된 약물 조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보호합니다. 잘못된 약제로 인한 연간 약 7,000명의 사망자 중 20%는 서면 처방전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합니다. 더욱이 이 잘못된 약제는 국가 의료 보험 제도에 매년 7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게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에서 서면 및 구두 처방전의 오류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 보험 제도의 연간 약 1억 3,00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e-처방은 의사와 약사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처방전의 약 30%는 알아보기 힘들 글씨로 약사들이 의사에게 전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e-처방은 처방이 조제되기를 약국에서 기다리거나 처방전을 가져다 주고 다시 처방약을 가지러 가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합니다.

규제 약물의 e-처방으로 규제 약물의 거래는 안전하게 암호화된 방법으로 의도된 수령인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

환자의 이용을 보호하면서 특정 약의 남용을 중지시키는 규제 약물 스케줄 (Schedules) 업데이트

이 법률은 하이드로코돈을 Schedule III에서 제거하고 구성비와 상관없이 Schedule II에 하이드로코돈을 넣어 처방약의 남용과 싸웁니다. 하이드로코돈은 가장 많이 남용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처방약 중 하나입니다. 작년 뉴욕주에서 430만 장 이상의 하이드로코돈 처방전이 조제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고등학교 상급생들의 8%가 의료 이외 목적으로 하이드로코돈을 사용했습니다. 2009에만도 하이드로코돈의 의료 이외 사용으로 86,000명 이상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Schedule II에 하이드로코돈을 넣어 자동 리필을 제고하고,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공급까지 처방된 양 또는 제조된 양을 제한하여 남용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 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합법적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가 만성 통증을 포함한 몇몇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처방전의 겉에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해당 약품에 대한 공급을 처방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률은 또한 Schedule IV에 다른 약과 트라마돌을 추가할 것입니다. 트라마돌은 진통제로 DEA의 관심 약품으로 보여집니다.

처방약의 남용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 처방자들 교육으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하기

CDC에 따르면, 남용된 약물의 상당 부분은 이를 남용하는 이들에 의해 처방됩니다. 이 종합적인 법안은 규제 약물의 남용 가능성과 통증 치료와 약물 남용 방지를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해 의료인들을 점점 더 많이 교육시켜야 함을 인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진통제 처방 의식 프로그램하에서 보건부에 의해 제정된 작업 그룹의 기능을 확장시켜 이 작업 그룹은 다음에 관한 추천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통증 치료 문제에 관한 의사 및 약사의 계속적인 교육; (2) 규제 약물에 대한 합법적인 필요성을 가진 환자들의 이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3) 1-STOP 조항 이행; 및 (4) 1-STOP에 추가 규제 약물에 대한 의사의 진찰 필요성 포함하기. 보건국장은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 옹호 단체, 의사와 의료인, 약사와 약국

및 법 집행 기관 대표자를 포함한 - 이에 제한되지 않은 - 이해 당사자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처방약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안전한 처분 프로그램 생성

남용되는 처방약의 70%이상을 친지를 통해 얻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률은 DOH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통제되는 물질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DOH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경찰국과 협력하여 경찰서의 전술에 규제 약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 장소를 확립할 것입니다. 개인들은 이 장소들에서 원치 않고 사용되지 않은 규제 약물을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들은 승인된 회수 이벤트나 환경에 해가 되는 다양한 방법의 자가 처분을 통해서만 규제 약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연방 법규는 환자들이 약사와 의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규제 약물들을 반환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요커들에게 계속적으로 안전한 처분하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경감시킬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